

제302회 임시회  
2021. 9. 7.(화)



「안심·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」

##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

2021. 9. 7.


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
SEOUL AGRO-FISHERIES & FOOD CORPORATION

#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변경 보고

## 1. 개정이유

- 공사 정관 제23조에서 정원을 직급별, 직군별로 규정하고 있어 총 정원의 변동이 없는 직군 간 정원 조정 시에도 정관까지 개정 필요
- 직군 간 업무 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, 빠른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관에는 직급별 총 정원만을 규정
  - 사무직군, 기술직군별 정원은 직제규정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개정

## 2. 개정내용

- 직군별(사무직, 기술직) 정원표를 직군 구분 없는 통합 정원표로 개정
  - (현행) 직급별 정원표 : 직군별(사무직, 기술직) 정원 운영

| 계   | 임원 | 소계  |    | 1급 |    | 2급 |    | 3급 이하 |    |
|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|
|     |    | 사무  | 기술 | 사무 | 기술 | 사무 | 기술 | 사무    | 기술 |
| 364 | 3  | 273 | 88 | 7  | 1  | 22 | 4  | 244   | 83 |

- (개정) 직급별 정원표 : 직군 구분 없이 직급별 정원표 통합 운영

| 계   | 임원 | 직원  |    |    |       |
|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---|
|     |    | 소계  | 1급 | 2급 | 3급 이하 |
| 364 | 3  | 361 | 8  | 26 | 327   |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2020년도 노사합의(2020. 12. 18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 필
- 라. 질 차 : 이사회 의결 → 서울시의회 보고 → 서울시장 인가 및 공포 시행
- 마. 참고사항 : 정관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일부 개정(안)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(조직 및 정원)의 “별표 2”를 별지 “별표2”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 |
|---|--|
| 제23조(조직 및 정원) 공사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<span style="color: red;">별표2</span> 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 | 제23조(조직 및 정원) -----<br>----- <span style="color: red;">별표2</span> -----<br>-----<br>-----<br><br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부 칙</div><br>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
[별표 2]

〈 현 행 〉

### 정 원 표(제23조 관련)

○ 직급별 정원표

| 계   | 임원 | 소계  |    | 1급 |    | 2급 |    | 3급 이하 |    |
|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|
|     |    | 사무  | 기술 | 사무 | 기술 | 사무 | 기술 | 사무    | 기술 |
| 364 | 3  | 273 | 88 | 7  | 1  | 22 | 4  | 244   | 83 |

※ 비상임이사(감사) 미포함

○ 부서별 정원표  
공사에서 사장 책임하에 적의 배분 시행

〈 개 정 〉

### 정 원 표(제23조 관련)

○ 직급별 정원표

| 계   | 임원 | 직원  |    |    |       |
|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---|
|     |    | 소계  | 1급 | 2급 | 3급 이하 |
| 364 | 3  | 361 | 8  | 26 | 327   |

※ 비상임이사(감사) 미포함

○ 부서별 정원표  
공사에서 사장 책임하에 적의 배분 시행